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547
------------	------

2025년 4월 21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정준호 의원 외 25명

나. 제안일자 : 2025년 03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2일

라. 상정결과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5년4월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준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용 시 준수해야 할 교통

법규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함으로써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공공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교통법규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자전거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공공자전거 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 공공자전거 앱에서 대여자가 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인지하도록 안내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12조의2제4항)
-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이 개발 및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앱에서도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5. ~ 4. 9.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전거 이용시 안전수칙을 인지하기 위해 ‘서울공공자전거 앱’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표출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개정안을 공감하며,
- 현재, 공공자전거 ‘따릉이 앱’에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상시 표출 중이고, 민간플랫폼 앱에도 안전수칙이 공지·표출되도록 협조요청 하고 있음

1) 보행자전거과-5135(2025.4.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이용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통행원칙 및 이용자 안전수칙 등의 교통법규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이용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함)에 관련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출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공공자전거 앱에도 이를 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용어 신설 관련(안 제2조제7호)

- 안 제2조제7호는 서울공공자전거(일명 “따릉이”)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및 기본요금 결제, 무인 대여 반납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서울공공자전거 앱’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민간회사에서 운영²⁾하는 시스템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별첨자료 참조)

2) 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 민간 공공자전거 앱 :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와 협력을 통해 연계한 민간 플랫폼 사의 앱을 말한다.

■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표출 관련(안 제12조의2제4항, 제5항)

- 안 제12조의2제4항은 이용시민이 공공자전거 이용 시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서울공공자전거 앱’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표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자전거의 안전한 통행과 사고 예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서울시도 최근 공공자전거 통행원칙 등을 이용시민에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공공자전거 앱’ 사용시 공공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관련법규를 표출하고 있음
- 다만, 서울시가 해당 앱에서 “3일 동안 그만보기” 기능을(별첨자료 참조) 제공하여 공공자전거 이용시민들이 해당 법규 숙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능을 제거하여 공공자전거 이용시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2조의2제5항은 시장이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용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와 협력하여 공공자전거 이용 시스템과 연계한 ‘민간 공공자전거 앱(별첨자료의 토스 앱)’에도 자

전거 관련 교통법규 표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는 것임

- 시장이 민간 플랫폼 사의 공공자전거 앱에 공공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 통행규칙 및 안전수칙 등 관련법규를 표출토록 강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강제규정 아닌 임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해된다 할 것임
- 다만,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 시스템을 민간 플랫폼사와 연계할 경우 관련 법규 등을 상시 표출하는 조건으로 서울공공자전거 시스템의 연계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별첨자료 : 공공자전거 앱별 안전수칙 안내현황

구 분	앱 초기화면	안전수칙(팝업)	이용화면
서울공공자전거 앱 (따릉이)			
티머니 앱 (공공자전거)			
토스 앱 (따릉이 타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4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정준호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칠성,
서상열, 송도호, 송재혁,
오금란, 유정인,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종국, 한 · 신, 허 · 훈,
홍국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용 시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함으로써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공공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교통법규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자전거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공공자전거 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 나. 공공자전거 앱에서 대여자가 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인지하도록 안내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12조의2제4항).

다.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이 개발 및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앱에서도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 2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공공자전거 앱”이란 서울공공자전거 회원가입 및 기본요금 결제, 무인 대여 반납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이용 시민이 공공자전거 대여 시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공공자전거 앱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민간 공공자전거 앱(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와 협력을 통해 연계한 민간 플랫폼 사의 앱을 말한다.)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가 표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서울공공자전거 앱”이란 서울공공자전거 회원가입 및 기본요금 결제, 무인 대여 반납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7. · 8. (생 략)	8. · 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이용 시민이 공공자전거 대여 시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공공자전거 앱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⑤ <u>시장은 민간 공공자전거 앱(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와 협력을 통해 연계한 민간 플랫폼 사의 앱</u>

④ · ⑤ (생 략)

을 말한다.)에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가 표출되도록 노력해야 한
다.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교통법규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자전거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